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(위성곤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15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12.

발 의 자 : 위성곤 · 오세희 · 임호선
장철민 · 강득구 · 서미화
김기표 · 김영호 · 강준현
박희승 · 양문석 · 추미애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 국방부장관은 기본권교육은 매년 4회 이상, 성인지교육 등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, 2년마다 해당 교육의 효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·마련하여 다음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, 최근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포함한 문민통제 등의 헌법적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군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에 헌법교육이 없고, 그 책임과 역할이 중대한 장성급 장교의 교육과정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군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에 헌법교육을 신설하여 실시하도록 하고, 장성급 장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계급의 특성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군인이 헌법적

가치관에 입각하여 적법한 직무수행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8조).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의 제목 중 “기본권교육”을 “헌법교육·기본권교육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「대한민국헌법」과 이 법에서”를 “「대한민국헌법」에 대한 교육과 헌법과 이 법에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”을 “헌법교육,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(이하 “헌법교육등”이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”을 “헌법교육등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“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”을 “헌법교육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“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”을 “헌법교육등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 중 “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”을 “헌법교육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(종전의 제7항) 중 “제6항”을 “제7항”으로, “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”을 “헌법교육등”으로 한다.

- ⑤ 국방부장관은 장성급 장교에 대하여 헌법교육등을 실시하는 경우 그 계급의 특성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

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8조(<u>기본권교육</u> 및 성인지교육등) ① 국방부장관은 「 <u>대한민국헌법</u> 」과 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군인의 기본권과 의무 및 기본권 침해시 구제절차 등에 관한 교육(이하 “기본권교육”이라 한다)을 매년 4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	제38조(<u>헌법교육</u> · <u>기본권교육</u> 및 성인지교육등) ① -----「 <u>대한민국헌법</u> 」에 대한 교육과 <u>헌법과 이 법에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(생 략)	② (헌행과 같음)
③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기본권교육</u> 및 <u>성인지교육</u>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병기본군사훈련기간 또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중에 <u>기본권교육</u> 및 <u>성인지교육</u>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<u>헌법교육</u> , <u>기본권교육</u> 및 <u>성인지교육</u> 등(이하 “ <u>헌법교육</u> 등”이라 한다)----- ----- ----- <u>헌법교육</u> 등----- -----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헌행과 같음)
④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<u>기본권교육</u> 및 <u>성인지교육</u> 등을 위한 세부 실시 사	④ ----- ----- <u>헌법교육</u> 등----- -----

항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성인지교육등은 각 군 및 계급별 특성에 맞도록 세분화하여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⑤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 시행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⑥ 국방부장관은 2년마다 각 군의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의 효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·마련하여 다음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외에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-. -----

-----.

⑤ 국방부장관은 장성급 장교에 대하여 헌법교육등을 실시하는 경우 그 계급의 특성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⑥ -----

-----헌법교육등-----

-----.

⑦ -----
-----헌법교육등-----

-----.

⑧ -----제7항-----
헌법교육등-----

-----.